국 제 수 산 월 간 동 향

2021. 3

한국원양산업협회
KOFCC 해외수산협력센터

목 차

1. IOTC 황다랑어 특별회의(SS04) 참석 결과

2. 황다랑어 관리 합의 미뤄져, IOTC 특별 회의 6월에 논의 시작

3. 일본 수출 한국산 냉동굴, 가격 소폭 증가, 수입량 전년비 4% 감소

4. 글로벌 어업 감시단체, 2020년 중국 어업활동 급감 확인

5. EU, 노르웨이, 영국 간 3자 북해 어업 협정 타결

6. ISSF, RFMO 어획통제규칙(HCR) 개선 촉구

7. 세네갈-EU 입어약정, 누구에게 이득인가?

1 IOTC 황다랑어 특별회의(SS04) 참석 결과

□ 황다랑어 보존관리조치 개정 논의

○ EU와 몰디브 황다랑어 제안서

- 각자의 제안서 소개 후 두 국가는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제안서 개정본을 각각 제출

- (제안서 개정본 주요 내용)

EU 제안서	몰디브 제안서
1. 적용 • IOTC 협약수역 모든 선박에 적용 • 본 조치는 임시조치이며 '22년 연례회의까지 검토(신설) • 위원회의 MP 채택 시 바로 검토	1. 적용 • IOTC 협약수역 모든 선박에 적용 • '22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신설) 및 '22년 연례회의까지 검토 • 위원회의 MP 채택 시 바로 검토
2. 어획한도 • 선망 – '14년 5,000톤 이상 국가 : '14년도 어획량에서 (18% →) **20%** 감축 – 개도국의 경우 **17%** 감축(신설) – ('17-'19 →) **'14-'19년** 2,000~5,000톤 국가 : '14-'19년 평균 10% 감축 – 상기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 : ('17-'19 →) **'14-19년** 평균 어획량 유지 • 자망 – '14년 5,000톤 이상 국가 : '14년도 어획량에서 (15% →) **20%** – 개도국의 경우 **17%** 감축(신설) – ('17-'19 →) **'14-'19년** 5,000톤 이상 국가 : '14-'19년 평균 12% 감축 – ('17-'19 →) **'14-'19년** 2,000~5,000톤 국가 : '14-'19년 평균 8% 감축 – 상기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 : ('17-'19 →) **'14-19년** 평균 어획량 유지 • 연승 – '14년 5,000톤 이상 국가 : '14년도 어획량에서 (15% →) **20%** – 개도국의 경우 **17%** 감축(신설) – ('17-'19 →) **'14-'19년** 5,000톤 이상 국가 : '14-'19년	2. 어획한도 • 선망 – '14년 5,000톤 이상 국가 : '14년도 어획량에서 (35% →) **25%** 감축 **(SIDS 18% (신설))** – '14년 5,000 미만, '14-'19 평균 2,000톤 이상 국가 1) 선진국 : (20% →) **25%** 2) 개도국 : (16% →) **20%** **(SIDS 14% (신설))** – '14-'19 평균 2,000톤 미만 국가는 '19년도 어획량 유지 • 자망 – '14년 5,000톤 이상 국가 : '14년도 어획량에서 (20% →) **15%** 감축 – '14년 5,000 미만, '14-'19 평균 2,000톤 이상 국가 1) 선진국 : (20% →) **15%** 2) 개도국 : (16% →) **12%** – '14-'19 평균 2,000톤 미만 국가는 '19년도 어획량 유지 • 연승 – '14년 5,000톤 이상 국가 : '14년도 어획량에서 (20% →) **15%** 감축 – '14년 (2,000톤 →) **5,000톤** 미만, '14-'19 평균 2,000톤 이상 국가

평균 12% 감축 – ('17–'19 →) **'14–'19년** 2,000~5,000톤 국가 : '14–'19년 평균 8% 감축 – 상기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 : ('17–'19 →) **'14–19년** 평균 어획량 유지 • 기타 어구 – '14년 5,000톤 이상 국가 : '14년도 어획량에서 10% 감축 – ('17–'19 →) **'14–'19년** 5,000톤 이상 국가 : '14–'19년 평균 8% 감축 – ('17–'19 →) **'14–'19년** 2,000~5,000톤 국가 : '14–'19년 평균 4% 감축 – 상기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 : ('17–'19 →) **'14–19년** 평균 어획량 유지	1) 선진국 : (20% →) **15%** 2) 개도국 : (16% →) **12%** • 기타 어구 – '14년 5,000톤 이상 국가 : '14년도 어획량에서 (11% →) **9%** 감축 – '14년 5,000톤 미만, '14–'19 평균 2,000톤 이상 국가 1) 선진국 : (11% →) **9%** 2) 개도국 : (8% →) **6%** – '14–'19 평균 2,000톤 미만 국가는 '19년도 어획량 유지 • 국가 총 어획한도는 모든 어구 한도의 합이며, 한 어구의 초과어획량은 다른 어구에서 상쇄 가능 – 어구별 한도 재분배는 사무국에 보고(신설) – 2,000톤 미만 국가들은 2,000톤까지 허용(신설)
3. 공급선 • '20년 1월부터 공급선 2척은 선망선 5척 이상 지원 금지 • '17년 3월부터 추가 공급선 등록 금지 • 공급선 1척은 선망선 1척 이상 지원 금지(신설)	3. 공급선 • '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선 2척은 선망선 5척 지원 금지 • '22년 1월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선 3척은 선망선 10척 지원 금지 • '24년 12월 31일 이후 공급선 사용 금지
4. 행정 및 과학위 업무 • 선망/대형 연승(24m 이상) 어종별 어획량 사무국에 월간보고, 한도 80% 도달 시 주간보고 • 5개의 과학위 업무 추가 제안	4. 행정 및 과학위 업무 • 과학위원회는 황다랑어 관리절차 수립을 우선순위로 설정(신설)

- (주요 의견)

EU 제안서	몰디브 제안서
• (일본) 황다랑어 보존조치가 '16년부터 시작했음을 고려하여 기준년도는 '17년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료. 고래류 부수어획 보고 조항(39항) 삭제 입장 견지 • (한국) 어구 별 5,000톤 이상 조업국 감축률은 현행(결의19/01)의 감축률(15%) 유지 주장 • (몰디브) EU가 제안한 과학/보고 조항들은 개도국들에게 불공평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회원국들은 과학업무에 참여 가능한 인원이 달라 특정 회원국의 과학업무를 주도하게 되어 과학업무의 정치화 변질 가능성 우려 • (중국) 어획량 보고는 월간보고가 아닌, 현행되고 있는 2년 전 자료 이용을 1년 전 자료 이용으로 우선 개정되어야 할 것. 보고의무로 인한 회원국과 사무국의 업무 증가 가능성에 우려	• (일본) 개도국/선진국 차등 어획감축 동의하나, 공급선 전면 금지 동의 불가 • (EU) 공금선 일본과 입장 동의. 지난 6년간 어획감축 이행실적 고려해야할 것 • (한국) 5,000톤 이상 국가들 추가 감축 수용 불가. 2,000~5,000톤 국가들(신규로 감축이 적용되는 국가들)이 해야 할 것 • (중국) 국가마다 상황 다르니 국가별 다른 기준년도 적용 고려 필요 • (인도) 인도양 황다랑어 자원 악화에 책임이 있는 국가들만 어획량 감축해야 할 것 • (남아공, 케냐) 본 제안서 지지

- (논의 결과) 의장은 두 제안서로는 합의 도출이 어려움을 설명하며 EU와 몰디브가 제안서를 하나로 통합하기를 제안하였고,

- 이에 EU와 몰디브, 일부 연안국들이 모여 두 제안서를 하나로 통합

○ EU/몰디브 통합 황다랑어 제안서

- (통합 제안서 주요 내용*)

* EU와 연안국 사이 합의가 나지 않은 부분은 괄호로 표시

조 항	주요 내용
적용	(1항) 선박 길이 및 조업 수역 상관없이(신설) IOTC 협약수역에서 조업하는 모든 어선 (2항) '22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 및 '22년 연례회의까지 검토
어획한도	(5항) 선망 a. '14년 5,000톤 이상 국가 : '14년도 어획량에서 20% 감축 b. '14년 5,000 미만, '14-'19 평균 2,000톤 이상 국가 1) [연안] 개도국 : 17% 감축 2) 비개도국 : 20% 감축 c. '14-'19 평균 2,000톤 미만 국가는 '19년도 어획량 이하로 유지 d. (a), (b2)에 해당되는 SIDS 국가 : (a) 16%, (b2) 12% 감축 (6항) 자망 a. '14년 [EU 5,000]/[연안국 2,000]톤 이상 국가 : '14년도 어획량에서 [EU 20]/[연안국 15]% 감축 b. '14년 [EU 5,000]/[연안국 2,000]톤 미만, '14-'19 평균 2,000톤 이상 국가 1) [연안] 개도국 : [연안국 12]/[EU 17]% 감축 2) 비개도국 : [연안국 15]/[EU 20]% 감축 c. '14-'19 평균 2,000톤 미만 국가는 '19년도 어획량 이하로 유지 (7항) 연승 a. '14년 5,000톤 이상 국가 : '14년도 어획량에서 [연안국 15]/[EU 20]% 감축 b. '14년 5,000 미만, '14-'19 평균 2,000톤 이상 국가 1) [연안] 개도국 : [연안국 12]/[EU 17]% 감축 2) 비개도국 : [연안국 15]/[EU 20]% 감축 c. '14-'19 평균 2,000톤 미만 국가는 '19년도 어획량 이하로 유지 (8항) 기타 어구 a. '14년 5,000톤 이상 국가 : '14년도 어획량에서 10% 감축 b. '14년 5,000 미만, '14-'19 평균 2,000톤 이상 국가 1) [연안] 개도국 : 8% 감축 2) 비개도국 : 10% 감축 c. '14-'19 평균 2,000톤 미만 국가는 '19년도 어획량 이하로 유지 (9항) 국가 총 어획한도는 모든 어구 한도의 합이며, 한 어구의 초과어획량은 다른 어구에서 상쇄 가능 - (9bis) 어구별 한도 재분배는 사무국에 보고 - (9tera) 2,000톤 미만 국가들은 2,000톤까지 허용 (11ter) 6~9항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들이 '18-'21년 사이 한도(6~9항에 설정된 기준 어획량) 도달 시, 6~9항에 따른 어획한도 설(신설)
초과어획	(12bis) 결의19/01 어획 감축률을 '19년에 30% 이상 초과한 국가는 5% 추가 감축(EU 제안)
공급선 (연안국/EU	[연안국 제안] - '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선 2척은 선망선 5척 이상 지원 불가

합의 미도출)	- ‘’22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선 3척은 선망선 10척 이상 지원 불가 - ‘24년 12월 31일 이후 공급선 이용 금지 [EU 제안] - ‘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선 점진적 감축. 국가들은 공급선 감축 현황을 연례보고서를 통해 이행위에 보고 - ’20년 1월 1일부터 공급선 2척은 선망선 5척 이상 지원 불가 - 신규/추가 공급선 등록 불가 - 공급선 1척은 선망선 1척 이상 지원 금지 - 결의19/02(FAD) 보완 목적으로, 기국은 다음 해 1월 1일 전까지 어떤 선망선이 어떤 공급선의 지원을 받는지 매년 보고
행정	(25bis) 국가들은 사무국에게 [매달]/[2달에 한 번] 선망 및 24m 이상 연승선의 어종별 잠정 어획량 보고, 한도 80% 도달 시 [매주]/[2주에 한 번] 보고 (25tera) 25bis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들은 [4~6달 마다] 자국 열대다랑어 잠정 어획량 보고 (25quater) 국가 한도의 80% 도달시 사무국장은 해당 국가에게 통지. 100% 도달 시 해당 국가는 조업 폐쇄 및 폐쇄일 사무국장에게 통지 (27bis) 과학위 및 작업반들은 황다랑어 관리절차를 업무 우선순위로 설정

- (논의 내용) 본 통합 제안서 논의는 제1항(적용)에서부터 합의 도출에 실패

- 한국, 일본, EU, 몰디브 등은 현행 결의19/01의 황다랑어 자원 관리 실패 주원인이 면제 국가들임을 설명하는 SC 권고를 상기하며 개정 시에는 감축 면제 대상을 삭제해야 함을 주장하였고,

- 인도, 오만 등은 연안국의 소규모 어민들의 생계를 위해 EEZ에서 조업하는 24m 미만 선박들은 어획량 감축에서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

- (논의 결과) 일부 연안국들의 반복되는 면제 요청에 일본 등 국가는 연안국 소규모 어선을 면제하였을 시 발생할 상황을 먼저 파악하자고 제안

- 단, 기존 면제 대상인 24m 미만 선박이 아닌 10~15m 선박을 감축 대상에서 면제한다고 전제를 하였으며,

- 일본과 중국 등은 올해 연례회의 일정(6월 예정)을 고려하여 5월 1일까지 연안국들에게 자국 10~15m 이하 선박들의 황다랑어 어획량 데이터를 사무국에게 제출하기를 요청하였고,

- 본 데이터 제출은 의무가 아닌 자발적 기여이며, 제출된 데이터는 잠정 데이터로써 오직 해당 크기의 선박들을 면제하였을 시 황다랑어 어획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임을 강조하였음

- 본 데이터 분석은 의장이 제안한 회기간 계획에 따라 연례회의 전까지 회기간 논의와 함께 진행 예정

□ FAD 보존관리조치 개정 논의

○ 케냐/스리랑카 FAD 개정 제안서

- (논의 배경) 케냐 등 국가는 인도양 황다랑어 자원회복을 위한 선망선 규제를 강조하며 DFAD*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춘 FAD 보존관리조치 개정 제안서를 제출

* Drifting Fish Agrregating Devices : 주로 선망선이 이용하는 해저 바닥에 고정되지 않고 수면 위에 떠다니는 어류군집 장치(FAD)

- (논의 내용) 본 FAD 조치 개정 논의는 소작업반 개설을 통해 진행

조 항	주요 논의
FAD 정의	(1항n) FAD 정의 - (일본, 한국, EU) 케냐 등이 제안한 WCPFC FAD 정의는 불필요한 이행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가 많은 정의니 IOTC에 도입 반대 - (케냐) 합동 FAD 작업반에서 RFMOs의 FAD 정의를 일치하도록 제안한 바 있음. 이에 타 RFMO 정의 도입은 적절
FAD 한도	(4항) bouy 개수 제한 - (EU, 한국) 제안된 bouy 감축치에 대한 어떠한 과학적 근거/SC 조언 없음. 현 bouy 수치의 SC 검토 선행되어야 할 것 - (일본) bouy 수에는 타협 가능하나, SC 조언 없이 진행되는 개정 논의 절차에 우려 - (케냐 등 연안국) 황다랑어 자원 악화가 심각하여 SC 조언 기다릴 수 없기에 제안한 예방적 조치로서의 수치
DFAD 금어기	(17항) 7-9월 금어기 설정 - (EU) 금어기를 설정하려면 DFAD 뿐 아니라 AFAD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 - (한국) 금어기 관련 SC 조언 없었으며, 기간이 7~9월이어야 하는 과학적 근거도 부족 - (일본) 금어기 설정은 비금어기에 어획이 몰려 효과가 떨어지니 FAD 투망 횟수 제한이 더 효과적일 것 - (케냐) 다른 RFMO에서 실행하고 있는 조치를 가져왔을 뿐이며, 일본 등 국가들 다른 RFMO에서 다 동의하였으면서 IOTC에서 동의 안 하는 것 이해 안 됨 → (일본) 수역마다 일본 선단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무작정 동일 기준 적용은 비현실적 → (한국) WCPFC는 FAD 금어기 논의 시작 전 SC 연구 많이 이뤄졌고 SC 분석 자료에 기반하여 위원회가 논의하였으므로 현 IOTC 상황과는 전혀 다름
DFAD 마킹	(29항) DFAD에 소유주 정보를 담은 영구적 라벨 부착 - (한국) DFAD 뿐 아니라 AFAD도 관리 필요하므로 라벨 부착 필요 - (몰디브) 몰디브의 모든 AFAD는 정부 소유물이며 정부가 직접 관리 중임. 원한다면 AFAD 조항 신설 가능

- (논의 결과) 큰 이견으로 인하여 제안서 중 한 부분도 합의가 나지 않아 회기간으로 논의 지속 결정

□ 황다랑어 최소크기 논의

○ 스리랑카 최소크기 제안서

- (논의 배경) 스리랑카는 황다랑어 자원 회복을 위해서는 단순 어획량 감축으로는 부족함을 설명하며, 추가로 소형어 어획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92cm 미만 황다랑어 어획 금지를 제안

- (논의 내용) 본 제안에 대하여 대부분의 회원국은 회의적 반응을 보였음

- 일부 회원국은 본 제안이 92cm 이하 황다랑어의 폐기로 이어지게 되어 IOTC 결의19/05 (어획물 폐기금지)와 상충하게 됨을 지적하였고,

- 크기 제한으로 나타나는 high-grading*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음

* TAC 등으로 인해 어획량이 한정될 경우 고품질 어획물만 선상 보유하고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어획물은 바다에 폐기하는 행위

- 이와 더불어, 92cm 크기 제한과 함께 스리랑카가 제안한 10.3m 이하 선박 면제 기준 등이 모두 스리랑카 자체 기준일 뿐 위원회 SC의 분석 및 권고가 없음이 지적되었음

- (논의 결과) 본 제안서의 과학적 근거 부족이 지적되자 먼저 SC가 본 제안서를 검토하게 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 92cm 크기 제한의 의미를 알 수 없으니 단순 시간 낭비일 뿐이라 주장하는 일본의 반대로 SC 검토도 무산됨

- 스리랑카는 연례회의에서 본 제안서 수정하여 재제출 예정

2 황다랑어 관리 합의 미뤄져, IOTC 특별 회의 6월에 논의 시작

ㅇ 인도양 참치류 위원회 (IOTC) 특별회의가 8~12일, 온라인 회의로 개최

ㅇ 난획, 과잉 어획 상태인 황다랑어의 '22년 이후의 자원관리조치에 대해 논의

- (1) 어획량 삭감, (1) 집어장치 (FADs) 사용 수 규제, (3) 크기 규제, 3가지 제안이 논의 되었지만, 모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다음으로 미뤄짐

ㅇ IOTC는 일본, 중국, 한국, EU 등 31개국과 지역이 가입

ㅇ 현행조치에서 황다랑어 어획량이 '14년 수준에서 5,000톤을 넘는 한국, 인도네시아, 대만 등 8개국과 지역을 대상으로 어획량을 선망 '14년 대비 15% 감소, 연승 10% 감소시키는 관리조치를 실시 (일본은 대상 외)

ㅇ 일본 수산청에 따르면 이번에 논의한 제안은, (1)~(3) 과 같음

(1) 현행조치 적용의 기준이 되는 어획량을 5,000톤에서 2,000톤으로 줄여, 모든 어선을 대상으로 한다. (제안은 EU와 몰디브)

(2) FADs 사용 개수 상한을 현행 300개에서 150개로 줄인다 (케냐와 스리랑카)

(3) 체장 92cm 이하의 황다랑어 어획량을 일정 비율 이하로 한다 (스리랑카)

- 현재 관리 조치 대상으로 5,000톤의 기준이 있는데, 배타적 경제 수역 (EEZ)에서 전체 길이 24m 미만인 어선의 어획은 대상 외로 함

- 전체 어획량 중, 4할 이상이 연안 소형어선에 의한 어획이기 때문에 자원관리의 실효성을 갖게 하기 위해 제안국, 일본 모두 (1) 에는 찬성했지만, 연안국인 인도와 오만은 강하게 반대

- (2)나 (3)에 대해서는 조치의 과학적 근거가 없어 일본을 포함한 복수의 회원국이 반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함

- 올해 6월에 온라인 회의로 개최 예정인 연례회의를 목표로 계속해서 각국이 비공식 논의를 진행해갈 방침

- '19년 일본 어선의 조업 척수는 연승이 50척, 선망이 3척

ㅇ 일본 수산청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유감이지만, 6월 연례회의를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답변

※ 출처: 미나토 신문[1)]

1)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109906 ('21년 3월 24일 검색)

3 일본 수출 한국산 냉동굴, 가격 소폭 증가, 수입량 전년비 4%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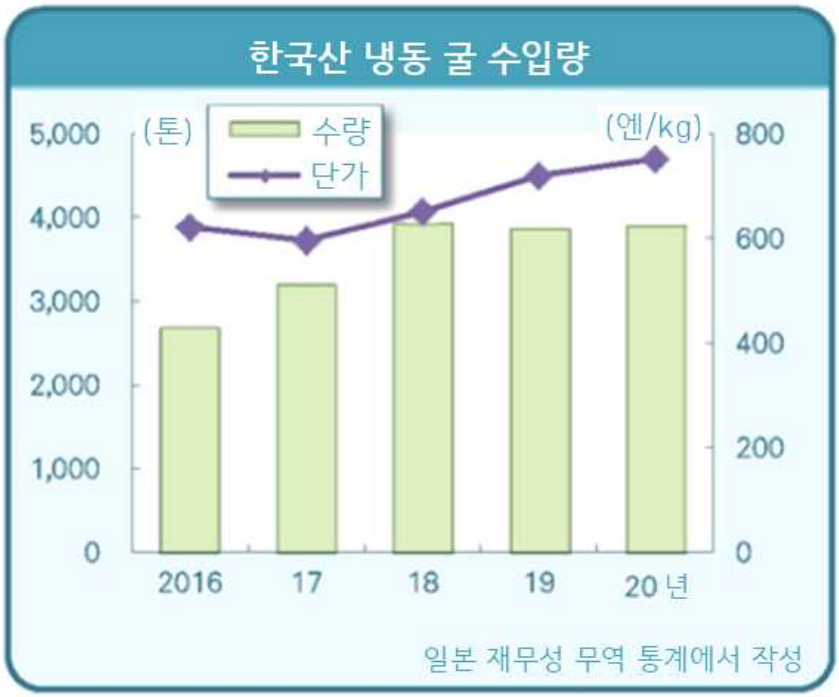

○ 한국산 냉동 굴 (껍질 깐 상품) 현지 상담이 최근 시작되었음

○ 3월 초순 현재는 굴 자체가 작은 알맹이로 시가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

○ 히로시마 등 일본산 원료와의 가격차가 전년 동기보다 줄어들고 있는 것, 코로나19 영향으로 외식 수요가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침

- 일본 국내에서 한국산 재고가 일정 수 남아 있어, 일본 상사의 매입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음

○ 2020년 한국산 냉동 굴 수입량은 전년비 4% 감소한 3,890톤

○ 1kg 평균 단가는 5% 높아진 752엔으로 과거 4년간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

○ 굴 껍질을 벗겨 살을 가공하는 인건비가 상승했고, 일본 국내에서 냉동 굴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비중이 증가, 부침개, 찌개, 전골 수요가 높아져서 최근

몇 년간 조금씩 가격을 올려왔음

- 올해도 내수가 호조, 생산 조정을 실시해 수급을 조정해서 시가를 유지했음
- 냉동 굴 생산 개시 시기인 2,3월 시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높은 가격
- 일본 상사에 따르면 한국산 냉동 굴 매입은 지금은 아직 굴이 작고, 싸지도 않아, 시세가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본격적인 상담은 4월에 들어서서 시작될 것으로 전망
- 단, 슈퍼에서 한국산이 원료인 굴 튀김 (반찬용)은 잘 팔리고 있음

※ 출처: 미나토 신문[2)]

2)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109801 ('21년 3월 24일 검색)

4 글로벌어업 감시단체, 2020년 중국 어업활동 급감 확인

□ **코로나19로 인한 제재로 인해 중국 어업 노력의 급감 양상을 보여 중국의 어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

○ 2018-2019년 대비 2020년 다른 나라의 어업활동 및 어업 시간의 경우 각각 5.4%와 4%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중국 국기를 게양한 어선의 활동의 경우 18.4% 감소를 보였고, 어업 시간 10.7시간 단축한 것으로 확인됨

- 외국 국기를 게양한 중국선의 포함 유무는 불명확함

○ 중국의 어획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원양 어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구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음

- 이번 조사 결과 또한 중국에서 열리는 전국 인민 대표 대회의 여러 대표들이 중국의 어업 노력의 해외 진출을 위해 더 많은 정부 지원을 요구하면서 나온 것

○ 중국의 정책은행인 국가개발은행 또는 중국 수출입 은행의 어업계 지원 확대 및 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시킬 것을 기대

○ 세계 곳곳에 중국의 '포괄적 어업 본부항(Comprehensive fishing base)'를 설치하여 세계적으로 중국 어선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이로 인하여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투자 전략의 핵심 항구가 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함

- 2020년은 코로나19 및 내국 소비에 집중함으로 인해 중국 정부의 BRI 투자 프로젝트가 크게 축소되었음

ㅇ 글로벌어업 감시단체는 2015년부터 구글과 환경 보호단체 Oceana와 SkyTruth의 공동사업으로 위성 이미지 및 추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박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체임

※ 출처: Seafoodsource[3)]

3)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global-fishing-watch-data-shows-drop-in-chinese-fishing-activity-in-2020 ('21년 3월 24일 검색)

5 EU, 노르웨이, 영국 간 3자 북해 어업 협정 타결

□ EU, 노르웨이, 영국 간 3자 북해 어업 협정 타결

○ EU, 노르웨이, 영국 사이 첫 3자 어업 할당량 회담이 이루어져 2021년 646,000 미터톤(MT)에 달하는 수산 자원량의 합동 관리에 대한 합의를 도출함

○ 영국의 EU 탈퇴 이후 1월에 처음 만난 3자는 두 달간의 논의 끝에, 3자 간 합의서에 서명함

- 대구, 해덕, 검정 대구, 와이트닝(whiting), 넙치, 청어의 자원량에 대한 공동관리 합의서를 서명함

- 상기 6가지 수산 자원량 중 다섯 어종의 어획할당량이 국제해양 개발 위원회(ICES)의 과학적인 조언에 따라 최대 지속 어획량으로 설정됨

○ 새로 합의된 총허용어획량(TAC)에 의하면 해덕, 넙치, 청어 어획량 각각 25%, 2.3%, 7.4% 감소하였으나, 해덕 및 와이트닝(whiting) 자원량 각각 20% 및 19% 증가함

○ 북해의 스카게라크 해협 및 동부 해협의 대구 자원량과 관련하여 EU는 TAC를 16.5%로 감소하길 원했으나 합의 결과 10% 감소인 15,911MT로 결정

○ 3자는 대구의 성어 및 치어 보호를 위한 수역 폐쇄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계속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에 합의하였고 모니터링, 통제 및 감시에 대해 3자 간 협조가 이루어질 것을 합의함

ㅇ 북해의 상호여행법, 쿼터 교환 및 북해의 합동 관리된 자원량의 상호적 접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

ㅇ 원양 자원량에 대하여 EU는 노르웨이 바다에서 노르웨이 봄 산란 청어를 어획할 수 있는 쿼터를 부여받고 청보리멸(blue whiting)의 경우 다른 협정국의 수역에 상호적 접근으로 141,648MT를 어획할 수 있도록 함

ㅇ 양자 간 경제적으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쿼터 교환에 대한 협정도 이루어짐

- EU는 북극 대구 10,274MT, 노르웨이는 청보리멸 37,500MT

ㅇ 스카게라크 해협 및 카테갓 해협에서의 대구, 해덕, 와이팅, 넙치, 분홍새우, 청어 및 스프랏(Sprat) TAC 및 양자 상호 여행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

ㅇ 본 협정은 2020년 12월 31일 이후 부분적으로 중단되었던 노르웨이 해역에서 EU와 영국의 어업 활동을 가능하게 함

※ 출처: Seafoodsource[4)]

4) 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eu-norway-and-uk-conclude-north-sea-fishing-arrangements
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global-fishing-watch-data-shows-drop-in-chinese-fishing-activity-in-2020 (‘21년 3월 24일 검색)

6 ISSF, RFMO 어획통제규칙(HCR) 개선 촉구

ㅇ 최근 국제수산물지속가능성재단(ISSF)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해양관리협의회(MSC)의 어업기준에 비추어 분석하였을 때, 세계 다랑어 자원들은 개선할 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것은 특히 RFMO들의 어획통제규칙과 관련하여 특히 그러함.

ㅇ 'MCS 기준에 따른 세계 다랑어 자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23개 상업적 다랑어종 가운데 7개 종만이 과도어획 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것은 3개의 주요 MSC 원칙 가운데 2개의 원칙에 따른 분석 결과임 : 지속가능한 어족자원(원칙 1) 그리고 효과적인 어업관리(원칙 3)가 그것임. 부수어획과 같은 환경적 영향에 관한 분석(원칙 2)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ㅇ 지난 달에 발표된 이 보고서는 2013년부터 ISSF가 발표해 오고 있는 보고서의 8번째 버전임. 이는 전문가들에 의한 평가로 다랑어 RFMO 간 상호비교를 위한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모든 참다랑어 자원에 대하여 평가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ㅇ 원칙 1의 경우, ISSF는 7개 계군에 대하여 합격점수(80점 이상)를 부여하였음 : 대서양 북방 및 남방 날개다랑어 그리고 동부 참다랑어는 높은 점수를 받았음. 태평양에서는, 3개 계군만이 80점 이상을 받았음 : 서부 가다랑어, 남방 날개다랑어, 그리고 동부 황다랑어가 그것임. 인도양은 가다랑어가 합격점수 이상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계군이 낮은 점수를 받았음.

ㅇ 합격점수에 도달하지 못한 계군들은 주로 어획통제규칙(HCR) 및 수확전략(HS) 부문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임. WCPFC 계군들은 모두 녹색 영역에 있지만, 서부 가다랑어만이 합격점수 이상을 받았음. WCPFC에서는 현재

HCR이 부재한데, 이는 지난 수년간 연례회의에서 특히 황다랑어와 눈다랑어와 관련하여 계속 제기되어 온 이슈임. 보고서는 WCPFC에서 눈다랑어의 어업 폐사율 감소 노력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음.

ㅇ 동부태평양의 경우, 눈다랑어 자원이 최대지속가능생산량(MSY) 수준에 이르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점수가 낮은 것은 놀랍지 않은 일임. 2018년에 수행된 자원평가에 따르면, 이 자원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악화된 상태에 있었음. IATTC는 2016년에 HCR을 채택하였지만 어업폐사율 감소 및 어획한도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되고 있음.

ㅇ 지중해의 경우, 날개다랑어 자원이 HCR과 수확전략 부문에서 모두 낙제점을 받았고, 인도양에서는 황다랑어, 눈다랑어, 그리고 날개다랑어 자원 모두가 낙제점을 받았음. 향후 황다랑어 어획한도 감축계획에 대해 합의를 못하고, 지난 수년간 황다랑어 자원상태가 붉은색 영역에 있었음을 고려할 때, 결과는 예상되었던 것임.

ㅇ 원칙 3과 관련하여, 보고서는 여러 참치 RFMO들을 상호 비교하였음.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기구들은 80점 이상의 합격점수를 받았음. IATTC만이 의사결정 과정 부문을 포함한 7개의 모든 성과지표에서 합격점수를 받았음. 흥미로운 것은, IATTC는 작년 연례회의에서 새로운 보존관리조치를 마련하는 데 실패하고 기존의 조치를 2021년으로 연장 적용하기로 한 점임.

※ 출처: atuna.com [5)]

5) https://atuna.com/news/issf-rfmos-need-to-improve-harvest-control-rules?highlight=WyJpc3NmIiwiaXNzZidzIiwiaXNzZidzY29uc2VydmF0aW9uIiwiJ2lzc2YiLCJpc3NmJ3NzdXN0YWluYWJpbGl0eSJd (2021년 3월 18일 검색)

7 세네갈-EU 입어약정, 누구에게 이득인가?

ㅇ 한 세네갈 어업단체는 최근 세네갈 정부가 EU와 체결한 입어약정을 재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음.

ㅇ 세네갈 어민자치연합 사무총장 Moustapha Dieng은 EU와의 새로운 약정으로 세네갈이 받는 것은 "부스러기뿐"이라고 언급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하였음. 그는 EU가 지불하는 금액은 수산자원의 손실에 대한 보상액으로는 불충분한 것이라고 하였음.

ㅇ 지난 11월, 세네갈과 EU는 프랑스, 스페인 및 포르투갈 참치어선들이 2024년까지 세네갈 EEZ 내에서 계속 조업할 수 있도록 하는 입어약정을 갱신하였음. 하지만, 향후 5년간 EU는 매년 170만 유로만을 지불하게 됨. 약정으로 EU 선박들이 연간 11,750톤을 어획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EU가 톤당 약 259.63 유로를 지불하게 됨을 의미함.

ㅇ 이와 비교하여, 중서부태평양 PNA 해역에서는 선망선들이 하루 평균 12,000 USD를 지불하고 있음. 이 선박들이 하루 평균 30톤을 어획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도서국가들은 참치 1톤에 400 USD를 받고 있는 것임.

ㅇ DIeng 사무총장은 세네갈 어민들 또한 참치(날개다랑어)와 대구를 조업하고 있고, 이 어획물은 Yarakh, Yoff, Cayar, 및 Saint Louis 항구에서 양륙되고 있다고 하였음. 또한, 세네갈 정부가 자국의 수산자원에 대한 관리를 보다 잘하면, EU가 지불하는 돈보다 더 많은 경제적 부가 창출될 것이라고 하였음.

ㅇ 그는 EU와의 새로운 입어약정으로 EU 선단들이 감성돔과 조개류도 "부수어

획"의 명목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되었음을 또한 지적하였음.

ㅇ 서부 아프리카 어업단체들은 EU가 자국 바다에서 다랑어 및 기타 어류들을 어획하고 있는 데 대해 충분한 보상을 지불하고 있지 않음을 수년 동안 비판해 왔음.

※ 출처: atuna.com [6)]

6) https://atuna.com/news/senegal-tuna-union-unhappy-with-govt-on-eu-fishing-deal?highlight=WyJzZW5lZ2FsIiwic2VuZWdhbCdzIl0= (2021년 3월 26일 검색)